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0	2024.12.26

1. 목적

- 1.1 본 문서는 효성(이하 ‘회사’)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회사는 본 정책을 통해 “최고의 기술과 경영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는 회사의 미션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 2.1 ‘인권’의 정의 및 적용범위는 회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따른다.
- 2.2 ‘환경’의 정의 및 적용범위는 회사의 환경경영 정책을 따른다.
- 2.3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사, 지역주민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2.4. ‘공급망 ESG 리스크’란 공급망 내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및 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3. 적용범위

- 3.1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 및 공급망에 적용한다.
- 3.2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 대리점,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3.3 다만,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공급망 관리 일반 원칙

회사는 발생 가능한 공급망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식별된 잠재적 부정적 위험을 예방 및 완화하고, 실질적 부정적 위험을 제거 및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1 공급망 내 원부자재 공급사 및 협력사(이하 ‘협력사’)를 선정하는 부서(이하 ‘구매부서’)는 신규 협력사 선정 시 ESG 리스크 진단을 실시하여 신규 협력사 등록 평가에 반영한다.
- 4.2 구매부서는 협력사와 계약 체결 시 ESG 리스크 식별 및 조치 관련 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서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동반성장협력사와는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한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0	2024.12.26

4.3 구매부서는 ESG경영 부서의 지원을 받아 주요 협력사에 대해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구매부서는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조치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거래관계를 중단한다.

4.4 회사는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 해소를 위한 조치 또는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며, 성과가 우수한 협력사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4.5 회사는 공급망 내 ESG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 할 수 있는 현장 실사 전문 인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친환경 구매

회사는 순환경제 및 자원 절약에 기여하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구매를 통해 회사 제품의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구매부서는 품질과 가격 이외에 원부자재의 친환경성을 검토하여 구매 시 우대한다.

5.1 ESG경영 부서는 친환경 제품과 관련 된 글로벌 표준 및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친환경 기준을 제시하며, 구매부서는 원부자재 구매 시 이 기준을 참고 한다.

5.2 구매부서는 유해화학물질 저사용 제품이나 폐기물 저감 제품, 자원소모 축소 제품, 재활용 또는 바이오 소재로의 전환 등을 발굴하여 친환경 구매를 확대한다.

5.3 구매 활동 시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실시하는 협력사를 우대한다.

6. 공급망 내 기후변화 대응

회사는 주요 협력사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를 지원한다.

6.1 회사는 주요 협력사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 Scope 1, 간접배출 Scope 2)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원·부재료에 대해서는 제품 LCA(Life Cycle Assessment)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2 회사는 주요 협력사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요구하고, 수립 목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6.3 회사는 협력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공급망 내 인권 및 노동

회사는 공급망 내 협력사들이 회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0	2024.12.26

7.1 회사는 공급망 내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육체적·심리적 억압, 고문, 차별 등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용인하지 않는다.

7.2 회사는 공급망 내 성착취, 전쟁범죄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반인류적 범죄, 대량학살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8. 공급망 역량 강화 지원

회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8.1 회사는 협력사의 원가, 품질, 안전, 마케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2 회사는 협력사가 ESG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매년 중점 관리가 필요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3 회사는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컨설팅 및 관련 설비를 지원한다.

9 공급망 ESG 리스크 식별

9.1 회사는 국제노동기구(ILO),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표준 및 회사의 협력사 행동규범, 표준계약서, 인권경영 정책, 환경경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지표’를 주기적으로 갱신 및 관리한다.

9.2 회사는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지표를 바탕으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공급망 ESG 리스크 실사를 실시한다.

9.3 회사는 실사를 통해 드러난 리스크의 중요성, 영향 범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심각성’을 점수화한다.

9.4 회사는 실사를 통해 드러난 리스크의 재발 우려에 기초한 ‘발생가능성’을 점수화한다.

9.5 회사는 9.3항과 9.4항을 통해 수치화한 심각성 및 발생가능성과 구매량, 구매 비중을 종합하여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부터 조치를 해야 한다.

10 공급망 ESG 리스크에 대한 조치

10.1 회사는 우선순위가 식별된 공급망 ESG 리스크를 발생시킨 주체를 식별하고, 리스크가 잠재적 영향일 경우 예방 및 완화 활동을 해야하며, 실질적 영향일 경우 제거 및 최소화 활동을 해야한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0	2024.12.26

10.2 회사는 공급망 ESG 리스크의 예방·완화·제거·최소화를 포함한 조치(이하 ‘조치’)를 위해 협력사에게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량적·정성적 요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0.3 회사는 조치를 위해 8항을 포함한 금융·비금융적 지원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10.4 회사는 조치를 위한 근거로 4.2항의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10.5 회사는 시행된 조치에 대하여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며, 조치 시행 이후에도 공급망 ESG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4.3항과 같이 거래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11 공급망 ESG 리스크 실사 대상 및 절차

11.1 실사 대상은 구매량, 구매 비중, 대체 거래선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정한 주요 협력사를 우선으로 지정하며, 이와 독립적으로 공급망 ESG 리스크의 심각도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협력사도 실사해야 한다.

11.2 회사는 공급망 실사를 위해 공급망, 인권, 환경 등 ESG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가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및 육성한다.

11.3 회사는 실사 대상 협력사가 사전에 회사의 공급망 관리 정책 및 협력사 행동규범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1.4 회사는 실사 대상 협력사에게 사전에 실사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구해야 하며, 실사 후에는 실사 결과를 협력사에게 안내하고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11.5 회사는 실사 시 협력사의 법규 위반 여부, 국제 사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11.6 회사는 실사 시 실사 담당자 및 실사 대상 협력사가 적용받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12 고충처리 절차 구축

12.1 회사는 협력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본 정책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고충처리 접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12.2 회사는 해당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충사항이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3 회사는 고충 제기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당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하며, 고충 제기자에게 고충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	개정차수	최종 수정일
	0	2024.12.26

13. 모니터링

회사는 본 정책에 따라 시행한 공급망 ESG 리스크 식별, 예방, 완화, 제거, 최소화 결과에 따른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관련 정책 및 부속서]

1. 인권경영 정책
2. 환경경영 정책
3. 분쟁/책임광물 정책
4. 협력사 행동규범
5. 공정거래협약
6.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 지표

끝.